



개명(改名) 사유와 절차

최은순/변호사 www.womenlaw.co.kr

35 세된 어떤 의젓하고 멋있는 한 여성의 이름은 '김막동'이다. 그녀는 현재 아이 하나를 둔 엄마이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릴 때 주변의 놀림으로 정신적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막상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남에게 대는 것이 매우 거북스럽고 주눅이 든다. 그리하여 몇 번씩 이름을 바꾸고자 마음을 먹고 동사무소에 알아본 적이 있으나, 법원에다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번거롭고 하여 포기한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녀석 까지 엄마 이름을 가지고 놀려 이번에는 꼭 개명을 하고 말리라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명(改名) 절차를 알려 달라고 한다.

사람의 경우에 보통 아주 특이하고 예쁜 이름의 경우에 이름값을 한다.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의 경우에는 거꾸로 이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족쇄가 될 수 있다. 위 사례가 그 좋은 예이다. 막동이, 막래 등 과거에 즉흥적으로 지은 이름의 경우가 보통 이에 해당되어 주위의 놀림감이 된다.

또한, 공들이, 공순이 등과 같이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이름이 사회의 변천에 따라 신조어가 생겨남에 따라 놀림감이 된 예도 있고 자신의 이름과 같은 유명연예인의 이미지가 나빠 덩달아 고생하거나 흥악범의 이름과 같아 고생하는 예도 있다.

사회적 놀림으로부터 오는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한 번 정한 이름을 바꾸기 위한 절차는 호적법 제 113조에서 정하고 있다.

개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에는 변경전의 이름, 변경후의 이름, 허가년월일을 기재하고 허가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명허가신청시에는 그 사유를 성실하게 주장, 소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 하는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신청의 취지(개명신청) 및 그 원인된 사실을 표시하고 그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주변인의 진술서 등)도 첨부하여야 한다.

연령대별로 볼 때, 개명 당사자가 통상 초등학생들과 같은 어린 경우에는 그 사유 자체만으로 설득력있다면 큰 어려움없이 허가결정(약 90%이상)이 나지만 성인들이 신청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를 더욱 까다롭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사람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진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었고, 그 이름을 기초로 사회적 관계와 법률적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이름을 함부로 바꾸면 사회적 혼란이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개명허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호적상의 이름이 좋지 않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조리있게 기재하여 법원을 설득하여야 한다. 위에서 든 예들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 있는 개명사유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름의 뜻풀이가 좋지 않다면, 이름 때문에 우환이 있다든가 막연히 그 이름이 싫다든가 부모와의 알력으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싫다든가 하는 주관적인 사정의 기재로는 개명사유로는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개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당사자의 연령과 함께 개명사유의 설득력 있는 기재로 보인다. **PPPK**